

◆ 서울특별시공고 제2024-1368호

**관악문화플라자 및 공공주택복합화사업에 따른 도시관리계획(난곡사거리지구중심
지구단위계획 및 난곡1 특별계획구역 세부개발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한 주민 의견청취 공고**

서울특별시고시 제1988-79호(1998.3.20.)로 최초 결정되고 서울특별시 고시 제2002-250호(2002.7.2.)로 결정(변경), 서울특별시고시 제2014-276호(2014.7.24.)로 결정(변경), 서울특별시 고시 제2023-315호(2023.7.27.)로 결정(변경) 고시된 난곡사거리지구중심 지구단위계획 및 난곡1 특별계획구역 세부개발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동법 시행령 제22조 및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제7조 규정에 따라 주민의 의견청취를 하고자 열람 · 공고합니다.

2024년 5월 2일
서울특별시

가. 열람기간 : 열람공고일 다음날로부터 14일간

나. 열람장소 : 서울특별시청 공공주택과(☎2133-7074),
서울주택도시공사 복합설계부(☎3410-7948),
관악구청 도시계획과(☎879-6364)

다. 열람사유 : 관악문화플라자 및 공공주택복합화사업을 위한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

라. 열람내용 : 관악문화플라자 및 공공주택복합화사업을 위한 도시관리계획(난곡사거리지구중심 지구단위계획 및 난곡1 특별계획구역 세부개발계획) 결정(변경)(안)

마. 관련도서 : 게재생략(열람장소에 비치)

※ 본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은 결정된 사항이 아니므로, 향후 행정절차 이행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습니다

구 고 시

◆ 서대문구고시 제2024-64호

도시계획시설(공원)사업 실시계획 인가(변경) 고시

1. 총독부고시 제208호(1940.3.12.)로 도시계획시설(공원)로 최초 결정 고시되고, 서울특별시고시 제2020-254호(2020.6.29.)로 최종 변경되었으며, 서울특별시고시 제2021-216호(2021.5.6.)로 공원조성계획 최종 결정되고, 서울특별시 서대문구고시 제2020-117호(2020.6.29.)로 최초 실시계획인가 고시된 공동근린공원에 대하여
2. 서울특별시 서대문구공고 제2024-596호(2024.4.11.)로 열람공고를 마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에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7조에 따라 실시계획을 변경인가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3. 본 내용을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개별 통지할 것이나 송달불능 등 미수령자에 대하여는 본 고시로 통지를 갈음하며, 관계 서류는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 푸른도시과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024년 5월 2일
서 대 문 구 청 장

가. 사업시행지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연희동 산118-103 1필지

나.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1) 사업의 종류 : 도시계획시설(공원)사업
- 2) 사업의 명칭 :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공동근린공원) 조성

다. 사업의 면적 : 7㎡

라. 사업의 내용 : 토지보상 7㎡ (1필지)

마.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1) 성 명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장
- 2) 주 소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연희로 248, 서대문구청

바. 시설관리청 : 서울특별시장

사. 사업의 착수 및 준공예정일 : 실시계획 인가고시일 ~ 2025.6.28.까지

아.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물건의 지번, 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 외의 권리명세 : 별도 첨부

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9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 등의 귀속 및 양도에 관한 사항 : 해당없음

차.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대문구청 푸른도시과(☎02-330-190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조서

소재지 지 번	지목	면적(㎡)	편입면적(㎡)	지분	소유자		소유권외의 권리			비고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의 내용	
계	1필지	7	7							
연희동 산118-10 3	임야	7	7	1	김*호	서울시 은평구 불광천길 388-**	서울특별시 은*구	서울 은평구 은평로 ***	압류	
							국민** **공단	강원도 원주시 건강로 **	압류	

◆ 구로구고시 제2024-69호

도시관리계획 「개봉역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특별계획구역㉠ 세부개발계획 결정(변경)」 결정(경미한 변경) 정정고시

서울특별시고시 제1997-136호(1997.05.06.)로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되고, 서울특별시고시 제2001-30호(2001.02.07.), 제2012-256호(2012.09.27.), 제2020-601호(2020.12.31.), 구로구고시 제2023-181호(2023.10.26.), 제2023-217호(2023.12.14.)로 결정(변경)된 고시의 기재사항을 정정하고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규정에 따라 도시관리계획(개봉동 지구단위계획) 결정(경미한 변경)을 정정고시합니다.

2024년 5월 2일

구로구청장

I. 결정(경미한 변경) 정정 취지

구로구고시 제2023-181호(2023.10.26.) 및 제2023-217호(2023.12.14.)로 고시된 「개봉역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특별계획구역㉠ 세부개발계획 결정(변경)」 결정(경미한 변경) 고시 기재사항의 정정이 있어 이를 정정하고자 함

II. 특별계획구역㉠ 세부개발계획에 관한(변경) 조서

8. 공공임대주택 설치계획에 관한 결정(변경) 조서(정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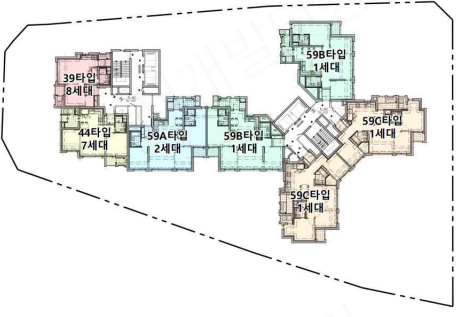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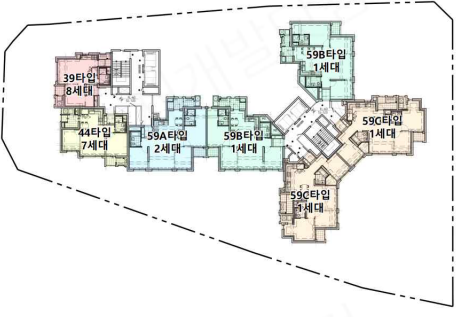
□ 공공임대주택 설치계획(정정)

구분	계획내용		비고
	기정	변경	
임대주택 계획	- 市 조례 제55조 제22항에 따라 준주거지역에서 용적을 완화를 위한 임대주택 설치(서고시 제2019-313호 적용) - 평면 및 건물 형태 등으로 임대주택과 분양주택이 구분되지 않도록 계획하고, 특정 동·층 및 라인에 임대주택이 집중되지 않도록 분산 배치 - 건립되는 공공임대주택의 토지는 기부채납, 건축비는 「공공주택 특별법」 제50조의3 분양가격 산정기준으로 산정함 - 공공임대주택의 설치는 제15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2020.10.28.) 심의결과에 따라 노후도 완화 적용을 위한 추가적인 공공임대주택 설치계획을 반영하여 결정된 용적률(61.72%) 이상으로 한다.	- 좌동 - 좌동 - 좌동 - 공공임대주택의 설치는 제15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2020.10.28.) 심의결과에 따라 노후도 완화 적용을 위한 추가적인 공공임대주택 설치계획을 반영하여 결정된 용적률(61.07%) 이상으로 한다.	- 공공임대주택 설치계획 기재사항 정정 - 용적률: 61.72 % → 61.07 %

－ 정정 사유 : 공공임대주택의 유형 등 건축계획 변경에 따른 기재사항 정정

□ 공공임대주택 설치계획 내용(정정)

구분	면적(㎡) / 비율(%)			비고
	기 정	변 경	변 경 후	
구역면적	2,637.00	-	2,637.00	•공공임대주택 설치계획 기재사항 정정 연면적: 1,392.60㎡ → 1,367.96㎡ 용적률: 62.17 % → 61.07 %
대지면적	2,240.00	-	2,240.00	
지상층연면적	11,131.35	-	11,131.35	
공공임대주택 연면적	1,392.60	감)24.64	1,367.96	
용적률	496.94 %	-	496.94 %	
공공임대주택 용적률	62.17 %	감) 1.10	61.07 %	

기정	 [기준층 평면도]	• 6개 타입 21세대		
		구분	유형	세대수
변경	 [기준층 평면도]	임대주택	39	8
			44	7
			59A	1
			59B	1
			59C	2
			59D	2
		합계		21
변경	 [기준층 평면도]	• 5개 타입 21세대		
		구분	유형	세대수
임대주택		39	8	
		44	7	
		59A	2	
		59B	2	
		59C	2	
합계		합계		21

※ 공공임대주택의 유형 및 세대수는 향후 건축계획 변경 및 인허가 과정에서 市 관련부서(공공주택과) 협의를 통해 일부 변경될 수 있음

- 정정 사유 : 공공임대주택의 유형 등 건축계획 변경에 따른 연면적 등 산정착오로 인한 기재 사항 오기 정정

III. 관계도면 : 생략 (이 외 계획 내용은 변경없음)

IV. 시민의 열람편의를 위하여 구로구 도시계획과(☎02-860-3249)에 관련 관계도서를 비치하고 있습니다.

◆ 구로구고시 제2024-80호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실시계획인가 고시

1. 구로구 고시 제2023-216호(2023.12.14.)로 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 고시, 구로구 공고 제 2024-359호(2024. 2.22.)로 실시계획 인가를 위해 열람 및 사업인정에 관한 의견청취 공고 완료한 「항동 222 ~ 12-18간 도로개설사업」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제91조 및 같은 법률 시행령 제97조·제100조, 「서울특별시도시계획조례」 제 68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실시계획 인가 고시 합니다.

2024년 5월 2일

구로구청장

가. 사업시행지 : 서울특별시 구로구 항동 222 ~ 12-18간

나.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종 류 : 도시계획시설(도로) 사업
- 명 칭 : 항동 222 ~ 12-18간 도로개설

다. 사업 규모 : 도로개설 폭 12m, 연장 75m

라. 사업시행자의 성명·주소

- 성 명 : 서울특별시 구로구청장
- 주 소 : 서울특별시 구로구 가마산로 245 구로구청

마. 사업착수 및 준공예정일 : 실시계획인가일로부터 2년간

바.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 및 그 소유자·권리자의 성명·주소 : 별 첨

사. 공공시설 등의 귀속 및 양도에 관한 사항 : 해당없음

아.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구로구청 도로과(☎02-860-3128)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토 지 조 서

○ 사 업 시 행 자 : 구로구청장

○ 사 업 의 명 칭 : 항동 222 ~ 12-18간 도로개설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 (㎡)	편입 면적 (㎡)	소 유 자		이해관계인		소유권 이외의 권리내용	비고
					성 명	주 소	성 명	주 소		
1	항동 12-29	도로	172	172	이OO	서울특별시 O동 O-O				
2	항동 13	대지	245	242	박OO	서울특별시 구로구 O동 O-O 000000아파트 000-000				
3	항동 222	구거	515	309	국토교통부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4	항동 231	도로	365	321	국토교통부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 상기 지번은 분할 전 지번으로 토지분할 후 지번정정 예정임.

물 건 조 서

○ 사 업 시 행 자 : 구로구청장

○ 사 업 의 명 칭 : 향동 222 ~ 12-18간 도로개설

일련번호	소재지 지 번	물건의 종 류	구조 및 규격	수 량 (㎡)	실 제 이 용 상 황	소 유 자		관 계 인		소유권 이외의 권리내용	비고
						성 명	주 소	성 명	주 소		
1	향동 13	건물	철근콘크리트조	514	건물	박○○	서울특별시 구로구 ○동 ○-○ 00000아파트 000-000				
		가건물	판넬	36	철물점						
		창고	철제	22	창고						
		펜스	철제	1식	펜스						
2	향동 222	펜스	철제	1식	펜스						
3	향동 235-32	펜스	철제	1식	펜스						
4	향동 235-37	펜스	철제	1식	펜스						

◆ 관악구고시 제2024-45호

도시계획시설(공원)사업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관악11)

1. 「건설부고시 제369호(1980.11.15.)」로 도시계획시설(공원) 결정되고, 「관악구고시 제2019-210호(2019.07.04.)」로 도시계획시설(공원)사업 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고시되고, 「관악구고시 제2021-195호(2021.12.27.)」로 도시계획시설(공원)사업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된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보상사업 - 관악산도시자연공원(관악11)」에 대하여
2. 사업기간을 연장하고자 「관악구공고 제2024-578호(2024.03.14.)」로 실시계획(변경)인가를 위한 열람공고를 완료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제90조, 제91조, 같은 법 시행령 제97조, 제99조, 제100조에 의거 실시계획을 변경 인가 고시합니다.
3. 관계서류는 관악구청 공원녹지과(☎02-879-6524)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 및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024년 5월 2일

관 악 구 청 장

가. 사업위치 : 관악구 봉천동 산58번지 일대

나.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1) 종 류 : 도시계획시설(공원)사업
- 2) 명 칭 :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보상사업[관악산도시자연공원(관악11)]
- 3) 사업내용 : 장기미집행 공원용지 보상 등 공원조성
- 4) 면 적 : 8,950m²

다. 사업시행자 : 관악구청장(서울시 관악구 관악로 145)

라. 시설관리청 : 서울특별시청(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마. 사업기간(변경)

- 기정 : 2020. 02. 13.~2025. 02. 12.

- 변경 : 2020. 02. 13.~2025. 12. 31.

바.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조서(변경) : 불임참조

사. 공고방법 : 서울시보 및 서울시·관악구 홈페이지 게재

아.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관악구청 공원녹지과(☎02-879-652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토 지 조 서

○ 사 업 명 :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보상사업 [관악산도시자연공원(관악11)]

연번	소재지	지목	면적(㎡)		소유자			소유권 이외의 권리			비고
			지적	편집 면적	성명	공유지분	주소	성명	주소	권리의 종류 및 내용	
합계	19필지		8,950	8,950							
	북천동 293-1	전	102	102	서울특별시 단독		서울시 중구 세종대로 110				
	북천동 292-3	전	122	122							
	북천동 282-1	전	66	66							
	북천동 283-2	잡	175	175							
	북천동 283-3	잡	248	248							
	북천동 226-1	전	99	99							
	북천동 261-0	전	354	354							
	북천동 262-1	답	443	443							
	북천동 254-0	전	1,091	1,091							
	북천동 산43-3	임	145	145							
	북천동 산43-4	임	307	307							
	북천동 산43-5	임	202	202							
	북천동 산43-2	임	509	509							
	북천동 산43-6	임	126	126							
	북천동 248-2	대	1,041	1,041							

서울시 중구 세종대로 110

단독

서울특별시

연번	소재지	지목	면적(㎡)		소유자			소유권 이외의 권리			비고
			지적	폐입면적	성명	공유지분	주 소	성명	주소	권리의 종류 및 내용	
	봉천동 산58-0	임	581	581	**0이세***파**** **문중	단독	서울시 관악구 낙성대로 ** *****				부지사용계 약
	봉천동 산58-3	임	2,791	2,791							
	봉천동 산58-1	임	396	396							
	봉천동 283-4	대	152	152	대원빌고 조계중 첨나선원	단독	서울특별시 관악구 낙성대로**				부지사용계 약
		건축물	(108.24)	(108.24)							

◆ 관악구공고 제2024-46호

도시계획시설(공원)사업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봉천동 245번지 일대)

1. 「건설부고시 제369호(1980.11.15.)」로 도시계획시설(공원) 결정되고, 「관악구고시 제2019-66호(2019.06.20.)」로 도시계획시설(공원)사업 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고시되고, 「관악구고시 제2021-189호(2021.12.20.)」로 도시계획시설(공원)사업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된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보상사업 - 관악산도시자연공원(봉천동 245번지 일대)」에 대하여
2. 사업기간을 연장하고자 「관악구공고 제2024-577호(2024.03.14.)」로 실시계획(변경)인가를 위한 열람공고를 완료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제90조, 제91조, 같은 법 시행령 제97조, 제99조, 제100조에 의거 실시계획을 변경 인가 고시합니다.
3. 관계서류는 관악구청 공원녹지과(☎02-879-6524)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 및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024년 5월 2일

관 악 구 청 장

가. 사업위치 : 관악구 봉천동 산245번지 일대

나.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1) 종 류 : 도시계획시설(공원)사업
- 2) 명 칭 :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보상사업[관악산도시자연공원(봉천동 245번지 일대)]
- 3) 사업내용 : 장기미집행 공원용지 보상 등 공원조성
- 4) 면 적 : 12,556㎡

다. 사업시행자 : 관악구청장(서울시 관악구 관악로 145)

라. 시설관리청 : 서울특별시청(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마. 사업기간(변경)

- 기정 : 2019. 06. 20.~2024. 06. 19.
- 변경 : 2019. 06. 20.~2025. 12. 31.

바.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조서(변경) : 불임참조

사. 공고방법 : 서울시보 및 서울시·관악구 홈페이지 게재

아.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관악구청 공원녹지과(☎02-879-652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토 지 조 서

○ 사 업 명 :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보상사업 - 관악산도시자연공원(봉천동 245번지 일대)

연번	소재지	지목	면적(㎡)		소유자			소유권 이외의 권리			비고
			지적	확립면적	성명	공유지분	주소	성명	주소	권리의 종류 및 내용	
합계	6필지		13,316	12,556							
1	봉천동 240-2	임	9,476	9,476							
2	봉천동 246-1	전	579	579							
3	봉천동 246-0	전	860	860							
4	봉천동 245-0	전	1,183	1,183							
5	봉천동 256-0	전	914	914							
6	봉천동 257-0	전	304	304							

◆ 관악구고시 제2024-47호

도시계획시설(공원)사업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봉천동 247-2번지 일대)

1. 「건설부고시 제369호(1980.11.15.)」로 도시계획시설(공원) 결정되고, 「관악구고시 제2019-99호(2019.09.05.)」로 도시계획시설(공원)사업 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고시되고, 「관악구고시 제2021-191호(2021.12.21.)」로 도시계획시설(공원)사업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된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보상사업 - 관악산도시자연공원(봉천동 247-2번지 일대)」에 대하여
2. 사업기간을 연장하고자 「관악구공고 제2024-579호(2024.03.14.)」로 실시계획(변경)인가를 위한 열람공고를 완료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제91조, 같은 법 시행령 제97조, 제100조에 의거 실시계획을 변경 인가 고시합니다.
3. 관계서류는 관악구청 공원녹지과(☎02-879-6524)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 및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024년 5월 2일

관 악 구 청 장

가. 사업위치 : 관악구 봉천동 247-2번지 일대

나.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1) 종 류 : 도시계획시설(공원)사업
- 2) 명 칭 :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보상사업 - 관악산도시자연공원(봉천동 247-2번지 일대)
- 3) 사업내용 : 장기미집행 공원용지 보상 등 공원조성
- 4) 면 적 : 1,693㎡

다. 사업시행자 : 관악구청장(서울시 관악구 관악로 145)

라. 시설관리청 : 서울특별시청(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마. 사업기간(변경)

- 기정 : 2019. 09. 05.~2024. 09. 04.
- 변경 : 2019. 09. 05.~2025. 12. 31.

바.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조서(변경) : 불임참조

사. 공고방법 : 서울시보 및 서울시·관악구 홈페이지 게재

아.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관악구청 공원녹지과(☎02-879-652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토 지 조 서

○ 사 업 명 :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보상사업 - 관악산도시자연공원(봉천동 247-2번지 일대)

연번	소재지	지목	면적(㎡)		소유자			소유권 이외의 권리			비고
			지적	필면적	성명	공유지분	주소	성명	주소	권리의 종류 및 내용	
합계			1,693	1,693							
1	봉천동 247-2	대	331	331							
2	봉천동 247-4	전	1,137	1,137	서울특별시	단독	서울시 중구 세종대로 110				
3	봉천동 247-3	전	225	225							

◆ 관악구고시 제2024-50호

도시계획시설(공원)사업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

1. 「건설부고시 제369호(1980.11.15.)」로 도시계획시설(공원) 결정되고, 「관악구고시 제2019-51호(2019. 5. 9.)」로 도시계획시설(공원)사업 실시계획인가 고시, 「관악구고시 제2021-174호(2021. 12. 2.)」로 도시계획시설(공원)사업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된 관악산도시자연공원에 대하여
2. 사업기간을 연장하고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7조, 제100조의 규정에 따라 실시계획(변경)을 인가 고시합니다.
3. 관계서류는 관악구청 공원녹지과(☎02-879-6525)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 및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024년 5월 2일

관 악 구 청 장

가. 사업위치 : 관악구 신림동 산124-14번지 일대

나.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1) 종 류 : 도시계획시설(공원)사업
- 2) 명 칭 :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보상사업[관악산도시자연공원(관악3)]
- 3) 사업내용 : 장기미집행 공원용지 보상 등 공원조성
- 4) 면 적 : 5,539m²

다. 사업시행자 : 관악구청장(서울시 관악구 관악로 145)

라. 시설관리청 : 서울특별시청(서울시 중구 세종대로 110)

마. 사업기간(변경)

- 기 정 : 2019. 05. 09.~2024. 05. 08.
- 변 경 : 2019. 05. 09.~2025. 12. 31.

바. 사업편입 토지조서 : 붙임참조

사. 공고방법 : 서울시보 및 서울시·관악구 홈페이지 게재

아. 기타 궁금하신 내용은 관악구청 공원녹지과(☎02-879-652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편입 토지조서

○ 사 업 명 :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보상사업 [관악산도시자연공원(관악3)]

구분	소재지	지목	면적(㎡)		소유자			소유권 이외의 권리			비고
			지적	편입면적	성명	공유자분	주소	성명	주소	관리의 종류 및 내용	
합계	29필지		5,539	5,539							
1	신림동 산124-14	임야	145	145	서울특별시	단독	서울시 중구 세종대로 110				
2	신림동 산124-16	임야	245	245							
3	신림동 산124-27	임야	241	241							
4	신림동 산124-28	임야	347	347							
5	신림동 산124-30	임야	324	324							
6	신림동 산124-31	임야	238	238							
7	신림동 산124-32	임야	238	238							
8	신림동 산124-45	임야	238	238							
9	신림동 산124-46	임야	238	238							
10	신림동 산124-47	임야	417	417							
11	신림동 산124-49	임야	893	893							
12	신림동 산124-50	임야	238	238							
13	신림동 산124-60	임야	255	255							
14	신림동 산124-61	임야	221	221							
15	신림동 산124-62	임야	228	228							

구분	소재지	지목	면적(㎡)		소유자			소유권 이외의 권리			비고
			지적	편입면적	성명	공유자분	주소	성명	주소	관리의 종류 및 내용	
16	신림동 산124-63	임야	278	278							
17	신림동 산124-64	임야	96	96							
18	신림동 598-233	대지	129	129							
19	신림동 598-234	대지	99	99							
20	신림동 598-235	대지	93	93							
21	신림동 598-236	대지	119	119							
22	신림동 598-237	대지	126	126							
23	신림동 598-238	대지	93	93							

◆ 서초구고시 제2024-88호

청계산근린공원2 조성사업(토지보상) 실시계획(변경) 고시

1. 건설부고시 제465호(1971.08.06.)에 의하여 도시계획시설(도시자연공원) 결정되고, 서울시 고시 제2014-156호(2014.04.24.)로 공원조성계획결정 및 지형도면 작성 고시, 서울시고시 제2021-405호(2021.07.29.)로 공원조성계획(변경) 결정된 서울특별시 서초구 원지동 산 4-13번지 일대의 청계산 근린공원에 대하여,
2.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보상사업을 시행하고자 서울특별시 서초구 고시 제2019-90호(2019.05.16.) 및 서울특별시 서초구 고시 제2022-218호(2022.12.01.), 서울특별시 서초구 고시 제2023-181호(2023.12.29.)로 실시계획(변경) 고시한 사항을 변경하기 위하여 서초구 공고 제2024-853호(2024.04.12.)로 열람 공고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실시계획(변경)고시합니다.
3. 토지소유자 및 이해 관계인에게 개별 통지할 것이나, 미수령자에 대하여는 본 고시로 갈음하며 관계 도서는 서울특별시 서초구청 공원녹지과(☎02-2155-6870)에 비치되어 있습니다.

2024년 5월 2일

서 초 구 청 장

가. 사업 시행지의 위치: 서울특별시 서초구 원지동 산4-13번지

나.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1) 종류: 도시계획시설사업(공원)
- 2) 명칭: 청계산근린공원2 조성
- 3) 내용: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토지보상

다. 사업의 면적

- 1) 변 경 전: 25,000㎡
- 2) 변 경 후: 7,976㎡
- 3) 변경사유: 도시계획시설 현황측량에 따른 면적 확정

라.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1) 시행자: 서울특별시 서초구청장
- 2) 주 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남부순환로 2584번지

마. 시설관리청: 서울특별시청

바. 사업의 착수예정일 및 준공예정일

- 1) 변 경 전: 실시계획고시일부터 2024년 5월 13일까지

2) 변경 후: 실시계획고시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3) 변경사유: 지적불부합에 따른 지적(현황, 경계) 측량 시일 소요로 당초 사업기간 내 보상 절차 이행 불가로 사업기간 연장

사.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소재지, 지번, 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 그 소유자, 권리자의 성명과 주소: 별첨 조서 참조

아. 고시방법: 서울시보 및 서초구청 홈페이지 게재

자. 기타문의: 서초구청 공원녹지과(☎2155-6870)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조서

○ 사업명: 도시계획시설(청계산근린공원2 조성)사업

일련 번호	소재지 지 번	지목	면 적(㎡)			소 유 자			소유권 이외의 권리		
			지적	편입면적		주 소	성 명	지분	성명	주소	권리의 종류및내용
				당초	변경	증감					
	계		211,522	25,000	7,976	감)17,024					
1	원자등 산4-13	임	211,522	25,000	7,976	감)17,024	이순*	7/10			
							조은*	2/10			
							이종*	1/10			

※ 위 토지조서는 등기부등본 상 소유자 기준이며 향후 보상 시 관리관계 및 물건(건물 등) 등을 확인하여 시행할 예정임

◆ 강남구고시 제2024-61호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철도) 결정(경미한 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특별시고시 제1993-77호(1993.3.24.) 도시계획시설(철도)로 최초 결정되고, 서울특별시고시 제1999-333호(1999.10.25.), 서울특별시고시 제2023-150호(2023.4.27.)로 결정(변경)된 도시철도 7호선 청담역 도시계획시설(철도)에 대하여 「국토의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5조 및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제68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도시관리계획 결정(경미한 변경)하고, 「국토의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작성하여 이를 고시합니다.

2024년 5월 2일

강 남 구 청 장

1. 결정 취지

도시철도 7호선 청담정거장 승강편의시설 설치를 통한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철도)을 결정(경미한 변경)하는 사항임

2.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 철도) 결정(변경) 조서

가. 도시계획시설(철도) 결정(변경)조서

구분	시설명	시설의 세 분	위 치	연장 (m)	면적 (㎡)	최 초 결정일	비 고
기정	도시철도	청담정거장	강남구 청담동 74일대	345	17,091	서울시고시 제1993-77호 (1993.3.24.)	
변경	도시철도	청담정거장	강남구 청담동 74일대	345	17,131		증)40.0㎡

나. 도시계획시설(철도) 변경 사유서

시 설 명	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도시철도 (청담정거장)	연장: 345m(변경없음) 면적: 17,091㎡→17,131㎡ (증 40.0㎡)	7호선 청담역 5번 출입구에 승강편의시설 설치를 위한 도시계획시설 면적 변경

3. 관계도면: 붙임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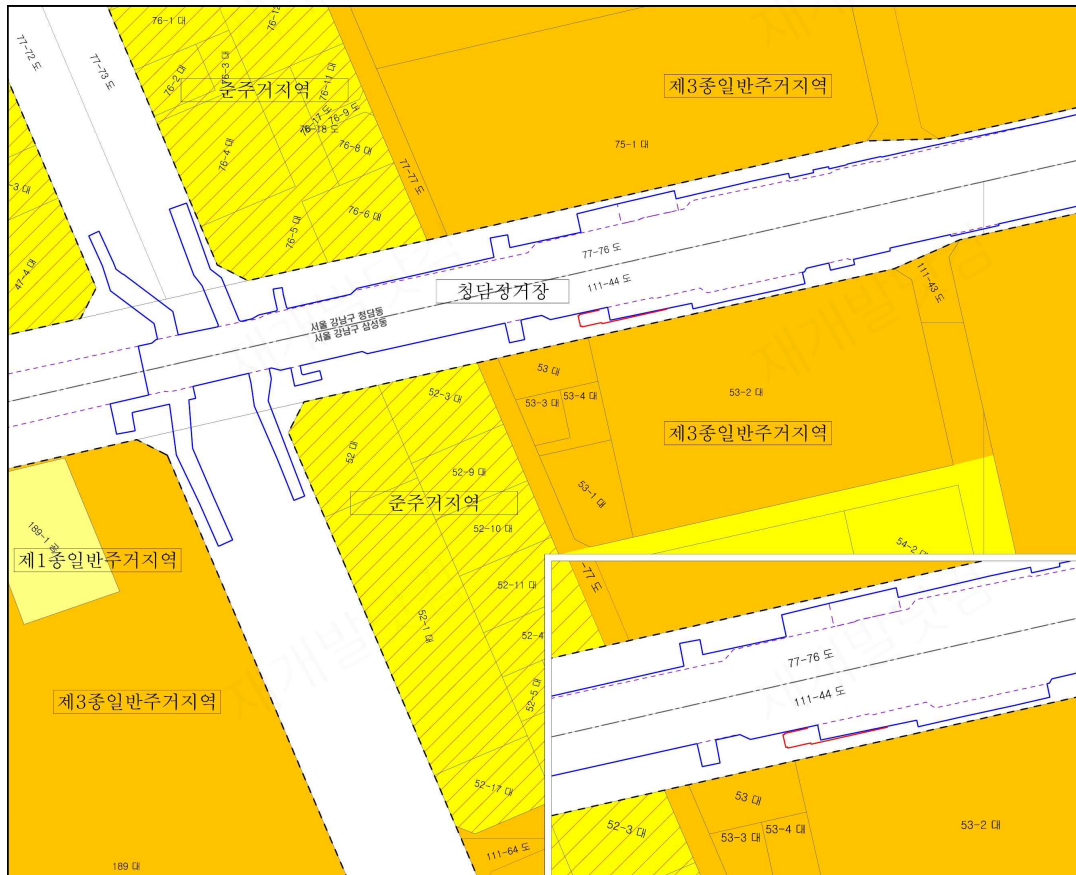
※ 첨부된 도면은 참고용 도면이므로 측량 및 그 밖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음

4. 열람장소: 강남구청 도시계획과(☎02-3423-6104)에 관계 도서를 비치하고 있습니다.

※ 고시문 및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음(<http://eum.go.kr>)에 게시할 예정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도시계획시설(철도: 청담정거장) 결정도]



SC = 1:1,000



- 도시계획시설(철도: 기정)
- 도시계획시설(철도: 변경)
- 도시계획시설
- 제1종일반주거지역
- 제2종일반주거지역
- 제3종일반주거지역
- 준주거지역

구 공 고

◆ 중구공고 제2024-483호

**도시계획시설(공원, 도로)사업 실시계획인가를 위한 열람 및 사업인정에 관한
의견청취 열람공고**

1. 건설부고시 제46호(1976.4.7.)로 최초 결정 고시, 서울특별시고시 제2023-414호(2023. 9.21.)로 무교다동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정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특별시고시 제2024-202호(2024.4.18.)로 다동근린공원 조성계획 결정(최초) 및 지형도면 고시된 다동근린공원과 주변 도로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7조에 의거 도시계획시설(공원, 도로)사업 실시계획을 작성하고, 같은 법 제9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9조에 의거 관계서류를 다음과 같이 열람 공고합니다.
2.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1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사업인정에 관한 의견을 청취하고자 합니다.
3. 관계도서는 서울특별시 중구 공원녹지과에 비치하여 관계인에게 보이며, 열람공고 내용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열람기간 내 의견서를 열람장소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는 개별통지 할 것이나, 미 수령자에 대해서는 행정절차법 제14조에 의거 본 열람공고로 갈음합니다.

2024년 5월 2일

중 구 청 장

가. 사업시행지의 위치 : 서울특별시 중구 다동 33-5 일대

나.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1) 종류 : 도시계획시설(공원, 도로)사업
- 2) 명칭 : 다동근린공원 조성사업

다. 사업의 면적 : 5,576.2㎡

라.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1) 성명 : 서울특별시장(위임: 중구청장)
- 2) 주소 : 서울특별시 중구 창경궁로 17

마. 사업의 착수예정일 및 준공예정일

－ 실시계획인가고시일로부터 2025년12월31까지

바.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물건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 및 그 소유자·권리자의 성명·주소 : 붙임조서

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9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 등의 귀속 및 양도에 관한 사항 : 해당없음

아. 열람기간 : 2024. 5. 2.(목) ~ 5. 16.(목)

자. 열람장소

－ 서울특별시 중구 공원녹지과(☎02-3396-5852)에 관계도서를 비치하고 있으니, 자세한 사항은 열람 장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조서

- 사업의 명칭 : 도시계획시설(공원, 도로)사업
- 사업 시행자 : 서울특별시청(위임: 중구청장)

일련 번호	구분	소재지 지 번	지목	지적 면적 (㎡)	편입 면적 (㎡)			소유자			이해관계인			비고
					소계	공원	도로	성명	주소	지분	성명	주소	관리의 종류 및 내용	
1	-	서울특별시 중구 다동 39-3	공	529.5	529.5	529.5	-	서울특별시중구	서울시 중구 창경궁로 17					
2	-	서울특별시 중구 다동 33-3	공	98.3	98.3	98.3	-	서울특별시중구	서울시 중구 창경궁로 17					
3	-	서울특별시 중구 다동 35-1	도	94.6	94.6	94.6	-	서울특별시중구	서울시 중구 창경궁로 17					
4	-	서울특별시 중구 다동 51-3	공	92.3	92.3	92.3	-	서울특별시	서울시 중구 세종대로 110					
5	-	서울특별시 중구 다동 51-10	대	97.9	97.9	97.9	-	서울특별시중구	서울시 중구 창경궁로 17					
6	-	서울특별시 중구 다동 46	공	488.9	488.9	488.9	-	서울특별시중구	서울시 중구 창경궁로 17					
7	-	서울특별시 중구 다동 51-29	공	32.2	32.2	32.2	-	서울특별시	서울시 중구 세종대로 110					
8	-	서울특별시 중구 다동 103-6	공	35.1	35.1	35.1	-	서울특별시중구	서울시 중구 창경궁로 17					
9	-	서울특별시 중구 다동 193	공	388.9	388.9	388.9	-	서울특별시중구	서울시 중구 창경궁로 17					
10	-	서울특별시 중구 다동 194	공	41	41	41	-	서울특별시중구	서울시 중구 창경궁로 17					
11	-	서울특별시 중구 다동 33-5	공	658.6	658.6	658.6	-	서울특별시중구	서울시 중구 창경궁로 17					
12	-	서울특별시 중구 다동 70-4	공	297.1	297.1	253.1	44.0	서울특별시중구	서울시 중구 창경궁로 17					
13	-	서울특별시 중구 다동 39-4	공	145.6	145.6	145.6	-	서울특별시중구	서울시 중구 창경궁로 17					
14	-	서울특별시 중구 다동 97-9	도	39.1	39.1	39.1	-	서울특별시중구	서울시 중구 창경궁로 17					

일련 번호	구분	소재지 지 번	지목	지적 면적 (㎡)	편입 면적 (㎡)			소유자			이해관계인			비고
					소계	공원	도로	성명	주소	지분	성명	주소	권리의 종류 및 내용	
15	-	서울특별시 중구 다동 33-4	공	59.2	59.2	59.2	-	서울특별시중구	서울시 중구 청경로 17					
16	-	서울특별시 중구 다동 56-2	공	70.4	70.4	70.4	-	서울특별시중구	서울시 중구 청경로 17					
17	-	서울특별시 중구 다동 172-3	도	1,268	55.4	20.4	35.0	서울특별시	서울시 중구 세종대로 110					
18	수용	서울특별시 중구 다동 50	대	162.6	162.6	30.9	131.7	길*전	서울시 **구 *****					
19	수용	서울특별시 중구 다동 45-6	대	317.5	317.5	317.5	-	대**주식회사	서울시 중구 다동 39					
20	수용	서울특별시 중구 다동 47	대	92.6	92.6	20.7	71.9	김*호	경북 **군 **면 **길 ***	1/6				
								김*현	서울시 **구 *****길, ***	1/6				
								김*	경북 **시 **길 **	1/6				
								김*정	서울시 **구 **로 ***, ***	1/6				
								손*자	충북 **군 **면 *****길 **	1/6				
								손*현	충북 **군 **면 **길 ***	1/6				
21	수용	서울특별시 중구 다동 51-9	대	62.8	62.8	62.8	-	주식회사***** (수탁자) ※ 신탁자: *****주식회사 (기부채납 예정)	서울시 **구 *****로 *** ※ 신탁자 주소 경기도 **시 **구 *****					

일련 번호	구분	소재지 지 번	지목	지적 면적 (㎡)	면적 면적 (㎡)			소유자			이해관계인			비고
					소계	공원	도로	성명	주소	지번	성명	주소	권리의 종류 및 내용	
22	수용	서울특별시 중구 다동 58-1	대	465.4	465.4	147	318.4	***합명회사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44-36		영등포세무서장		근저당	
23	수용	서울특별시 중구 다동 51-22	대	4.3	4.3	4.3	-	국(기획재정부)			종로세무서장		근저당	
24	수용	서울특별시 중구 다동 51-25	대	20.8	20.8	7.2	13.6	국(기획재정부)			주식회사 키움에스 저축은행	서울시 강남구 논현로 422	근저당	
25	수용	서울특별시 중구 다동 51-8	대	40.7	40.7	40.7	-	국(기획재정부)						
26	수용	서울특별시 중구 다동 51-27	대	3.3	3.3	3.3	-	국(기획재정부)						
27	수용	서울특별시 중구 다동 51-19	대	4.3	4.3	4.3	-	국(기획재정부)						
28	수용	서울특별시 중구 다동 51-16	대	2.6	2.6	2.6	-	국(기획재정부)						
29	-	서울특별시 중구 다동 39-2	도	340.7	93.3	-	93.3	서울특별시중구	서울시 중구 창경궁로 17					
30	-	서울특별시 중구 다동 46-1	도	321.4	321.4	-	321.4	서울특별시중구	서울시 중구 창경궁로 17					
31	-	서울특별시 중구 다동 33-6	도	334.5	328.5	-	328.5	서울특별시중구	서울시 중구 창경궁로 17					

일련 번호	구분	소재지 지 번	지목	지적 면적 (㎡)	면적 면적 (㎡)			소유자			이해관계인			비고
					소계	공원	도로	성명	주소	지번	성명	주소	관리의 종류 및 내용	
32	사용	서울특별시 중구 다동 53-8	대	222	171	-	171	주식회사***** (수탁자) ※ 신탁자: *****주식회사 (기부채납 예정)	서울시 **구 *****로 ***** ※신탁자 주소 경기도 **시 **구 *****					
33	-	서울특별시 중구 다동 70-5	도	131.9	131.9	-	131.9	서울특별시중구	서울시 중구 청경궁로 17					
34	-	서울특별시 중구 다동 56	도	152.5	129.1	-	129.1	서울특별시중구	서울시 중구 청경궁로 17					
합계					5,576. 2	3,786. 4	1,789.8							

수용 또는 사용할 물건조서

- 사업의 명칭 : 도시계획시설(공원, 도로)사업
- 사업 시행자 : 서울특별시장(위임: 중구청장)

일련 번호	소재지 지 번	물건의 종 류	구조 및 규격	면적 및 수량	소유자		이해관계인			비고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관리의 종류 및 내용	
1	서울특별시 중구 다동 50	건물	철근콘크리트	1,089.81	길*전	서울시 **구 *****				
2	서울특별시 중구 다동 45-6	건물	목조	181.82						
		건물	목조	33.06	대**주식회사	서울시 중구 다동 39				
		건물	세멘트벽돌	63.8						
3	서울특별시 중구 다동 47	건물	목조	85.18	김*호	경북**군**면**길**-*				
					김*현	서울시**구*****길,****				
					김*	경북**시**길**				
					김*정	서울시**구**로***,***				
					손*자	충북**군**면*****길**				
4	서울특별시 중구 다동 58-1	건물	철근콘크리트	2,326.73	손*현	충북**군**면**길**-*				
					***합명회사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44-36	영등포세무서장		근저당	
					소유자 미상		종로세무서장		근저당	
5	서울특별시 중구 다동 51-25	건물	판넬	34.6						임대수면 복합(무허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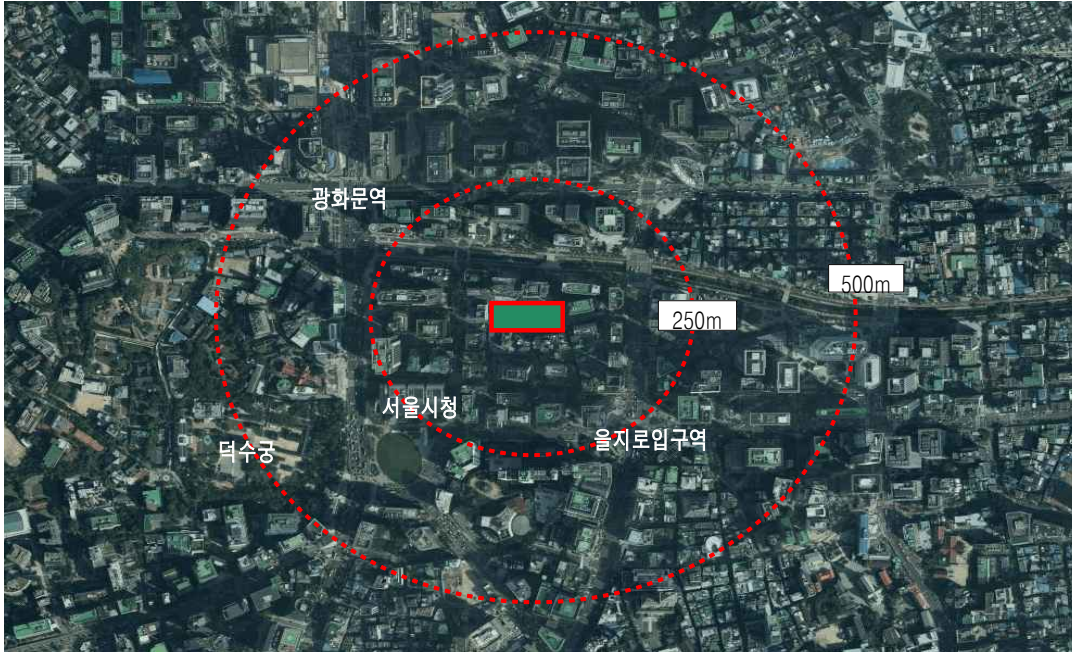
영업권 조서

- 사업의 명칭 : 도시계획시설(공원, 도로)사업
- 사업 시행자 : 서울특별시장(위임: 중구청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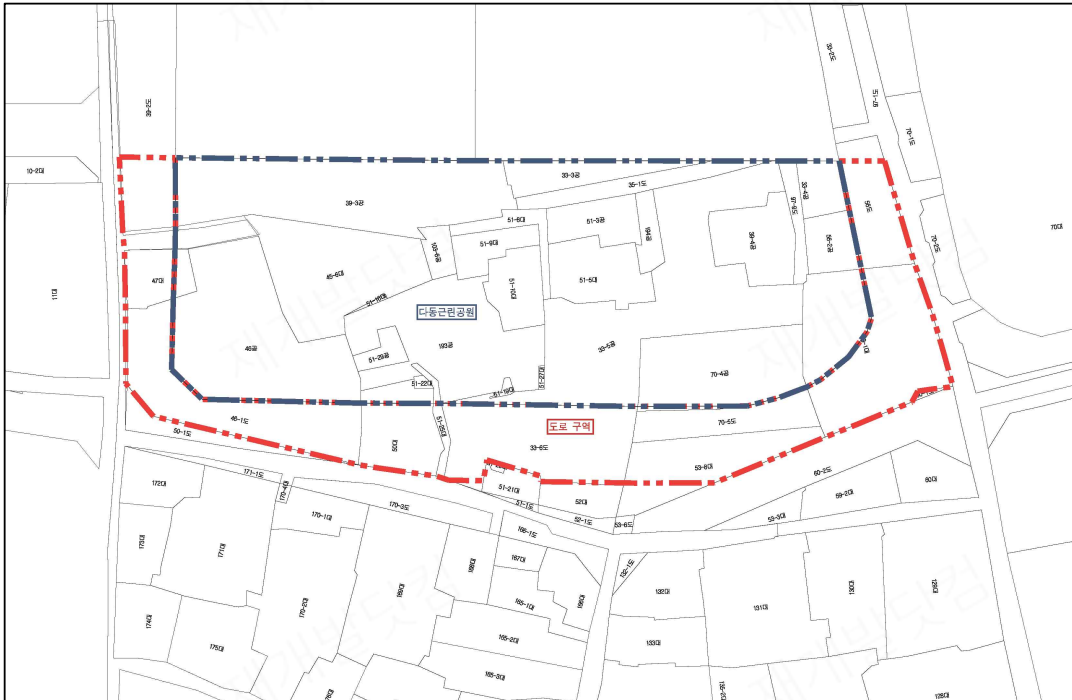
입권 면적 번호	소재지 지 번	물건의 종 류	상호	수량	영업의 종류	영업자			이해관계인			비고
						성명	주소	성명	주소	성명	관리의 종류 및 내용	
	서울특별시 중구 다동 45-6	건물	순기평가 (1층)	1	음식업	신*길	좌동					
	서울특별시 중구 다동 47	건물	동원간지탕 (1~2층)	1	음식업	신*숙	좌동					
서울특별시 중구 다동 50			킹키노래방 (지하)	1		김*숙	좌동					
			황부자 (1층)	1	음식업	정*호	좌동					
			나주곰탕 (2층)	1	음식업	권*영	좌동					
			한진오피스 (3층)	1		박*현	좌동					
			쥬메한양곡 (3층)	1		소*영	좌동					
			법무사 박병문 사무소(3층)	1		박*문	좌동					
			쥬수남기업 (5층)	1	무역회사	김*주	좌동					
서울특별시 중구 다동 58-1			나눔대부 (6층)	1		임*호	좌동					
			대림산업사 (7층)	1	건설업	강*태	좌동					
			B★W 노래방 (지하)	1		홍*범	좌동					

이월 입금 일	소재지 지 번	물건의 종류 및 용도	상호	수량	영업의 종류	영업자			이해관계인			비고
						성명	주소	성명	주소	성명	관리의 종류 및 내용	
			엘리스파이 (1층)	1		김*은	좌동					
			이자카야하루 (1층)	1	음식업	곽*은	좌동					
			미케집 서울시점점(1층)	1	음식업	신*희	좌동					
			BAR the moon (2층)	1		쥬**시그 나저	좌동					
			형설주방 영남점 (3층)	1	음식업	이*원	좌동					
			벤츠노래주점 (4층)	1		이*훈	좌동					
			zen 요가 (5층)	1		이*혁	좌동					
			명동팀하우스 고시원(6~7층)	1	숙박업	정*덕	좌동					

□ 위치도



□ 사업구역도



◆ 도봉구공고 제2024-776호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완료 공고

1. 서울특별시고시 제2022-400호(2022.9.29.) 도시관리계획(방학역세권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되고 서울특별시 도봉구고시 제2023-32호(2023.3.2.)로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실시계획인가고시 된 『방학1동 707~715-12 간 도로개설공사』의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이 완료되어,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2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완료 공고합니다.

2024년 5월 2일

도 봉 구 청 장

가. 사업의 종류 :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나.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시행자 : 서울특별시 도봉구청장

○ 주 소 :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656(방학동720번지)

다.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완료 공고내역

사업의 명칭	사업시행지의 위치	사업규모	실시계획 인가고시	사업기간
방학1동 707~715-12 간 도로개설공사	방학동 726-65 ~ 방학동 707-20	B = 20m L = 85m	도봉구고시 제2023-32호 (2023.03.02.)	2023.03.02. ~ 2023.12.14.

라. 사업문의 : 도봉구청 도로과(☎02-2091-4055)

◆ 은평구공고 제2024-868호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학교) 결정(변경)(안) 열람공고

1. 서울특별시고시 제1975-69호(1975.5.14.)로 최초 결정되고 서울특별시고시 제2009-36호(2009.01.29.)로 건축범위 등 일괄결정 된 구산동 152-3번지 일원 도시계획시설(학교)에 대하여 도시계획시설(학교)의 학교시설면적 및 건축물의 범위 변경·결정을 위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39조,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제68조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제7조 규정에 따라 이를 열람공고 합니다.
2. 본 열람공고에 대하여 의견이 있을 경우 열람기간 내에 열람장소로 의견서(서면작성)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 5월 2일

은 평 구 청 장

가. 열람기간 : 2024. 5. 2.~ 2024. 5. 16.

나. 열람장소 : 은평구청 도시계획과(☎351-7405)

다. 도시계획시설(학교) 결정(변경) (안)

1) 도시계획시설(학교) 결정(변경) 조서

구분	시설명	시설의 종류	위치	면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 후		
변경	학교	초등학교	구산동 152-3 일원	12,059	감)447.7	11,611.3	서울특별시고시 제1975-69호 (1975.5.14.)	

2) 건축물의 범위 결정(변경) 조서

건폐율(%)		용적률(%)		높이(층,m)		건축제한원화	비고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기정	변경		
30이하	40이하	120이하	120이하	5층이하	5층이하	-	제2종일반주거지역 (7층이하)

3) 변경사유서

구분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변경	학교	시설결정면적 변경 - 12,059㎡→11,611.3㎡ 감)447.7㎡	지적현황측량결과를 반영한 학교시설면적 변경
		건폐율 변경 - 30% → 40%	미래사회를 대비하는 교육이 실현될 수 있는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조성을 위하여 노후화된 서울구산초등학교 신축사업을 위한 건폐율 상향

라. 관련도서 : 생략(은평구청 도시계획과에 도서를 비치하고 있음)

마. 기타사항

- 열람 내용은 확정된 안이 아니므로 추후 결정(변경) 절차 이행 중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은평구 도시계획과(☎02-351-740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은평구공고 제2024-878호

**도시계획시설사업(역촌1주택 소공원1(가칭)) 조성계획(최초) 결정 주민의견 청취
열람 공고**

1. 서울특별시 고시 제2007-255호(2007. 07. 26.)호로 도시계획시설(공원) 최초 결정되고, 은평구 고시 제2022-69호(2022.04.11.)로 도시계획시설(공원)로 최종 결정된 역촌1주택 소공원1(가칭)에 대하여 공원조성계획(최초) 결정하고자
2. 「국토의 계획 및 이에 관한 법률」 제28조,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및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의 2에 따라 주민의견 청취를 위해 다음과 같이 열람공고 합니다.

2024년 5월 2일

은 평 구 청 장

가. 공원위치: 서울특별시 은평구 역촌동 228-6 일대

나. 공원명칭: 역촌1주택 소공원1

다. 면 적: 2,565.0㎡

라. 조성계획결정도 및 결정조서 : 붙임 참조

마. 열람기간 : 공고일로부터 14일간

바. 열람장소 : 은평구청 공원녹지과

사. 본 조성계획(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열람기간 내에 의견서를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은평구청(공원녹지과, ☎ 351-8008)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역촌1주택소공원1(가칭) 조성계획 결정(최초)조서

가. 총괄표 (은평구 역촌동 228-6 일원)

구 분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건축물			공작물	비고
			동수 (동)	바닥면적 (㎡)	연면적 (㎡)		
계	2,565.0	372.3				9	
소계	372.3	372.3				9	
기반시설	236.5	236.5					
조경시설	26.6	26.6					
휴양시설	63.5	63.5				5	
운동시설	36.4	36.4				3	
편익시설	9.4	9.4				1	
녹지 및 기타	2,192.7	-					녹지율 85.5%

나. 시설조서

구분	시설명	부호	위치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구조	규모	건축물(㎡)		공작물 (기)	비고
								바닥 면적	연면적		
계				2,565.0	372.3					9	
기반 시설	소계			236.5	236.5						
	산책로	가-1	부지내	143.8	143.8						
		가-2	부지내	63.1	63.1						
		가-3	부지내	29.6	29.6						
조경 시설	소계			26.6	26.6						
	돌담	나	부지내	9.4	9.4						
	화계	다	부지내	17.2	17.2						
휴양 시설	소계			63.5	63.5					5	
	진입쉼터	라	부지내	33.3	33.3					1	
	등의자	①	부지내	6.2	6.2					1	
	파고라	②	부지내	24.0	24.0					3	
운동 시설	소계			36.4	36.4					3	
	허리돌리기 외	마	부지내	36.4	36.4					3	
편익시 설	소계			9.4	9.4					1	
	엘리베이터	③	부지내	9.4	9.4					1	
녹지 및 기타	소계			2,192.7							
	녹지		부지내	2,192.7							

다. 도로조서

구분	등급	번호	폭원(m)	연장(m)	면적(㎡)	기능	기점	종점	비고
합계			1.8	110.4	236.5				
신설	소로	소계		110.4	236.5				
		1	1.8	66.4	143.8	산책로	진입광장	엘리베이터	
		2	1.8	27.7	63.1	산책로	부지경계	산책로1	
		3	1.8	16.3	29.6	진입로	엘리베이터	부지경계	

◆ 은평구공고 제2024-879호

**도시계획시설사업(역촌1주택 소공원2(가칭)) 조성계획(최초) 결정 주민의견 청취
열람 공고**

1. 서울특별시 고시 제2007-255호(2007. 07. 26.)호로 도시계획시설(공원) 최초 결정되고, 은평구 고시 제2022-69호(2022.04.11.)로 도시계획시설(공원)로 최종 결정된 역촌1주택 소공원2(가칭)에 대하여 공원조성계획(최초) 결정하고자
2. 「국토의 계획 및 이에 관한 법률」 제28조,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및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의 2에 따라 주민의견 청취를 위해 다음과 같이 열람공고 합니다.

2024년 5월 2일

은 평 구 청 장

가. 공원위치: 서울특별시 은평구 역촌동 189-94

나. 공원명칭: 역촌1주택 소공원2(가칭)

다. 면 적: 274.0㎡

라. 조성계획결정도 및 결정조서 : 붙임 참조

마. 열람기간 : 공고일로부터 14일간

바. 열람장소 : 은평구청 공원녹지과

사. 본 조성계획(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열람기간 내에 의견서를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은평구청(공원녹지과, ☎ 351-8008)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역촌1주택 소공원2(가칭) 조성계획 결정(최초)조서

가. 총괄표 (은평구 역촌동 189-94 일원)

구 분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건축물			공작물	비고
			동수 (동)	바닥면적 (㎡)	연면적 (㎡)		
계	274.0	22.9				3	
소계	22.9	22.9				3	
기반시설	0.0	0.0					
조경시설	0.0	0.0					
휴양시설	22.9	22.9				3	
운동시설	0.0	0.0					
편익시설	0.0	0.0					
녹지 및 기타	251.1	-					녹지율 91.6%

나. 시설조서

구분	시설명	부호	위치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구조	규모	건축물(㎡)		공작물 (기)	비고
								바닥 면적	연면적		
계				274.0	22.9					3	
휴양 시설	소계			22.9	22.9					3	
	등의자	①	부지내	-	-					2	
	파고라	②	부지내	22.9	22.9					1	
녹지 및 기타	소계			251.1							
	녹지		부지내	251.1							

다. 도로조서
해당없음

◆ 양천구공고 제2024-811호

도시관리계획(신정택지개발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 열람공고

1. 서울특별시 고시 제2002-1475호(2003.01.07.)로 택지개발사업공사완료된 신정택지개발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2조,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제7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6조 규정에 의거 주민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 본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열람기간 내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 5월 2일

양 천 구 청 장

가. 열람기간 : 공고일 다음날로부터 14일간

나. 열람장소 : 양천구청 6층 도시계획과(☎02-2620-3517)

다. 열람내용

1) 도시관리계획(신정택지개발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

가)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결정 : 변경없음

구분	구역명	위치	면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신정 택지개발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양천구 신정동 761-1번지 일원	117,020.7	-	117,020.7	건설부고시 제1996-123호 (1996.04.24.)	-

나) 용도지역·지구 결정 조서 : 변경없음

다) 도시계획시설에 관한 결정 : 변경

라) 도시계획시설이외의 토지이용계획 결정 조서 : 변경없음

마)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구성에 관한 결정 조서 : 변경없음

바) 건축물에 대한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배치·형태·색채·건축선에 관한 도시관리
계획 결정 조서

: 변경

사) 기타사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 : 변경없음

라. 관련도서 : 생략(열람장소 비치 도서로 같음)

마. 의견제출 : 본 지구단위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열람기간 내 열람장소로
서면(별도서식 없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바. 기타 자세한 사항은 양천구청 도시계획과(☎02-2620-3517)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 양천구공고 제2024-830호

도시공원 부지사용계약 체결 공고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의2에 따라 도시공원(온수도시자연공원구역) 부지 사용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2 제2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5월 2일

양 천 구 청 장

1. 도시공원 부지사용계약 체결내역

연번	공원명	위치(소재지)	지목	부지사용계약면적(㎡)
1	온수도시자연공원구역	양천구 신월동 산85-11	임야	7,782㎡

2. 부지사용 계약일 : 2024. 4. 29.

3. 부지사용 계약기간 : 2024. 4. 29. ~ 2027. 4. 28.

4. 기타 자세한 사항은 양천구청 공원녹지과(☎2620-359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강서구공고 제2024-886호

**강서구 내발산동 652-4번지 역세권복합개발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계획 결정(안) 재열람공고**

1. 서울특별시 강서구공고 제2022-2330호(2022.12.29.)로 열람공고 한 “강서구 내발산동 652-4번지 역세권복합개발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계획 결정(안)”에 대하여 2024년 제 1차 서울특별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수권소위원회 심의결과(수정가결)를 반영하여,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제7조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의거 주민 의견을 청취하고자 아래와 같이 재열람공고 합니다.
3. 본 지구단위계획 결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을 경우, 열람기간 내에 의견서를 서면으로 작성하여 강서구청 도시계획과 또는 서울도시계획포털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 5월 2일

강 서 구 청 장

가. 열람기간 : 2024. 5. 3. ~ 5. 16.(공고일 다음날부터 14일간)

나. 열람장소 : 서울특별시 강서구청 도시계획과 ☎ 02-2600-6846)

다. 열람내용 : 강서구 내발산동 652-4번지 역세권복합개발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계획 결정(안)

라.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안)

1)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사항

가)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조서

구분	구역명	위 치	면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신설	강서구 내발산동 652-4번지 역세권 복합개발 지구단위계획구역	강서구 내발산동 652-4번지	-	증) 2,718.2	2,718.2		-

※ 구역의 범위, 세부 계획 등 관련도서는 열람장소 및 서울도시계획포털에서 확인 가능

마. 관계도서 : 게재생략(열람장소에 비치)

※ 열람내용은 확정된 안이 아니므로, 추후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을 위한 절차 진행(업무추진) 중에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구로구공고 제2024-920호

도시계획시설(학교: 동양미래대학교)사업 공사완료 공고

- 서울특별시고시 제206호(1976.08.30.)로 도시계획시설(학교) 결정 및 서울특별시고시 제13호(1977.01.29.)로 지적승인되고 서울특별시고시 제37호(1977.02.22.)로 도시계획사업(학교)시행허가되고 서울특별시고시 제207호(1991.07.09.)로 도시계획시설(학교) 변경결정되고 서울특별시고시 제2002-280호(2002.07.02.)로 도시계획시설(학교) 변경 및 세부조성계획 결정되고 서울특별시고시 제2011-360호(2011.12.01.)로 도시계획시설(학교) 세부시설조성 계획 변경결정되고 구로구고시 제2012-80호(2012.07.12.)로 도시계획시설(학교)사업 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 인가 고시되고 구로구고시 제2013-157호(2013.12.26.)로 도시계획시설(학교)사업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되고 구로구고시 제2014-28호(2014.02.20.)로 도시계획시설(학교)사업 실시계획 변경인가 고시되고 서울특별시고시 제2014-322호(2014.09.18.)로 도시계획시설(학교) 변경결정 및 세부시설조성계획 변경결정 고시되고 구로구고시 제2014-157호(2014.10.16.)로 도시계획시설(학교)사업 시행자 변경지정 및 실시계획 변경인가 고시되고 구로구고시 제2016-106호(2016.07.07.)로 도시계획시설(학교)사업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되고 구로구고시 제2024-29호(2024.02.08.)로 도시계획시설(학교)사업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된 도시계획시설(학교 : 동양미래대학교) 사업에 대하여,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8조, 같은 법 시행령 제102조 및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제68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사완료 공고합니다.

2024년 5월 2일

구로구청장

- 사업시행지의 위치 : 서울특별시 구로구 고척동 62-160 일대

- 사업의 종류 및 명칭

가. 종류 : 도시계획시설(학교: 동양미래대학교)사업

나. 명칭 : 동양미래대학교 1·3호관 용도변경

- 사업의 규모 및 내용

가. 도시계획시설(학교) 규모

시설명	시설의 종류	구분	기정	변경	증·감	비고
학교	대학교	대지면적(㎡)	36,338.9	36,338.9	-	변경 없음
		건축면적(㎡)	9,566.31	9,566.31	-	변경 없음
		건축연면적(㎡)	77,714.48	77,714.48	-	변경 없음

시설명	시설의 종류	구 분	기 정	변 경	증 · 감	비 고
		건폐율(%)	26.33%	26.33%	-	변경 없음
		용적률(%)	135.71%	135.71%	-	변경 없음

나. 용도변경 사항

구 분	변 경 전		변 경 후		비 고
	용도	면적(㎡)	용도	면적(㎡)	
1호관 (지상1층)	교육연구시설 (강의실)	17.90	제1종근생시설 (휴게음식점)	17.90	용도변경 (면적증감 없음)
3호관 (지상1층)	제1종근생시설 (휴게음식점)	21.23	교육연구시설 (대학교)	21.23	용도변경 (면적증감 없음)

4.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성명 : 학교법인 동양학원 이사장

나. 주소 : 서울특별시 구로구 경인로 445

5. 사업의 착수일 및 준공일

가. 착수일 : 2024. 2. 8.

나. 준공일 : 2024. 4. 23.

◆ 구로구공고 제2024-934호

**도시관리계획[온수역일대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럭비구장 특별계획구역
세부개발계획] 결정(변경)(안) 재열람 공고**

1. 구로구 오류동 111-1 일원 역세권 활성화사업 추진을 위하여 구로구 공고 제2023-945호 (2023. 5.11.)로 열람·공고한 도시관리계획[온수역일대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럭비구장 특별계획구역 세부개발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하여 2023년 제15차 서울특별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결과를 반영하여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제7조에 따라 주민 등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아래와 같이 재열람·공고합니다.

2024년 5월 2일

구로구청장

가. 열람기간 : 공고일 다음날부터 14일간

나. 열람장소 : 구로구청 도시계획과(신관3층) [문의 : ☎02-860-2955]

다. 관계도서 및 계획설명서 : 생략(열람장소에 비치)

라. 도시관리계획(온수역일대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

1)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결정 : 변경(생략, 열람장소 비치 도서와 같음)

2) 토지이용 및 시설에 관한 결정 : 변경(생략, 열람장소 비치 도서와 같음)

가) 용도지역·지구에 관한 결정 조서

(1) 용도지역 결정 조서 : 변경

구 분		면 적(㎡)			구성비(%)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총 계		549,928.0	-	550,363.0	100.0	
주거지역	소 계	370,119.0	감) 28,713.8	341,405.2	62.0	
	제2종일반주거지역(7층이하)	289,381.0	감) 56,983.0	232,398.0	42.2	
	제2종일반주거지역	80,738.0	-	80,738.0	14.7	
	준주거지역	-	증) 28,269.2	28,269.2	5.1	
상업지역	근린상업지역	-	증) 29,148.8	29,148.8	5.3	
공업지역	준공업지역	179,809.0	-	179,809.0	32.7	

(2) 용도지구 결정 조서(변경없음)

나) 도시기반시설에 관한 결정조서 : 변경(생략, 열람장소 비치 도서와 같음)

3)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결정 : 변경(생략, 열람장소 비치 도서와 같음)

가) 가구 및 획지에 관한 결정조서(변경없음)

나) 건축물에 관한 결정조서(변경없음)

다) 기타사항에 관한 결정조서 : 변경(생략, 열람장소 비치 도서와 같음)

라) 특별계획구역에 관한 결정

(1) 특별계획구역에 관한 계획 : 변경(생략, 열람장소 비치 도서와 같음)

(2) 특별계획구역 계획지침 : 변경(생략, 열람장소 비치 도서와 같음)

마. 럭비구장 특별계획구역 세부개발계획 결정(안) : 생략(열람장소 비치 도서와 같음)

바. 본 도시관리계획[온수역일대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럭비구장 특별계획구역 세부개발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주민 및 이해관계인은 열람기간 내에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구로구청 도시계획과(☎860-2955)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 금천구공고 제2024-918호

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사업 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 인가를 위한 열람공고

1. 서울특별시고시 제2023-256호(2023.6.22.)로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된 독산동 953-9번지 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에 대하여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 인가를 시행하고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6조 및 제90조, 같은 법 시행령 제99조 규정에 따라 관계서류를 다음과 같이 열람공고 합니다.
2. 관계도서는 금천구청 건축과에 비치하여 공고일 다음날로부터 14일간 이해관계인 및 일반인에게 열람하고 있으며, 의견이 있으실 경우에는 열람 기간 내에 열람 장소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 5월 2일

금 천 구 청 장

가. 사업시행지의 위치 : 서울특별시 금천구 독산동 953-9

나.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종 류 : 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사업

○ 명 칭 : 금천세무서 청사 신축공사

다. 사업의 규모 및 면적

○ 규 모 : 지하3층/지상6층, 연면적 9,411.71㎡

○ 면 적 : 1,983.6㎡

라.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성 명 : 금천세무서

○ 주 소 : 서울시 금천구 시흥대로 315, 금천롯데캐슬골드파크4차 업무시설동

마. 사업의 착수 및 준공예정일 : 실시계획 인가 고시일로부터 2026.12.31일까지

바. 열람기간 : 공고일 다음날부터 14일간

사. 열람장소 : 금천구청 건축과

아. 수용 또는 사용할 물건의 소재지·지반·면적·소유권 명세 및 그 소유자의 성명·주소 : 붙임

자.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금천구청 건축과(☎02-2627-163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토 지 조 서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공부상 면적 (㎡)	법정 면적 (㎡)	소유 자		소유권 이외의 권리명세			비고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관리의 종류와 내용	
1	특산동 953-9	대	1,983.6	1,983.6	국(국세청)	서울시 금천구 시흥대로 315, 금천롯데캐슬포드파크4차 업무시설동				

◆ 관악구공고 제2024-994호

도시계획시설(공원)사업 완료 공고

1. 서울특별시 관악구 고시 제2019-62호(2019.6.7)로 도시계획시설(공원)사업 실시계획인가 고시된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보상사업[관악산도시자연공원(관악4)]」이 완료됨에 따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2조의 규정에 의거 완료 공고 합니다.
2. 관계서류는 서울특별시 관악구청 공원녹지과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 및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024년 5월 2일
관 악 구 청 장

가. 사업시행지의 위치 : 서울특별시 관악구 신림동 산134-1번지 일대

나.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종류 : 도시계획시설(공원)사업
- 명칭 :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보상사업[관악산도시자연공원(관악4)]

다. 사업면적 및 내용

- 면적 : 9,837m²
- 내용 :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토지보상

라. 사업시행자(시설관리청)의 성명 및 주소

- 사업시행자 : 관악구청장(서울특별시 관악구 관악로 145)
- 시설관리청 : 서울특별시청(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마. 사업기간 : 2019. 6. 7. ~ 2024. 6. 6.(사업완료일: 2024. 5. 2.)

바. 토지조서

구분	소재지	지목	면 적(m ²)	소 유 자		소유권 이외의 권리			비고
				성 명	주 소	성명	주소	내용	
합계	4필지		9,837						
1	신림동 산134-13	임	6,638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2	신림동 산134-1	임	1,302						
3	신림동 산134-2	임	598						
4	신림동 산134-3	임	1,299						

사. 관계도서 : 서울특별시 관악구청 공원녹지과 비치 ☎02-879-6521

◆ 강남구공고 제2024-1187호

**대모산 도시자연공원구역(개포동 산212-2) 부지사용계약을 위한 주민의견청취
열람공고**

1.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의2에 의거 도시자연공원구역 일부에 대하여 토지 소유자와 부지사용계약을 체결하기 위해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서울특별시 도시공원 조례」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열람공고 합니다.
2. 관계 서류는 서울특별시 강남구청 공원녹지과에 비치하여 공고일로부터 14일간 열람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분은 열람 기간 내에 서면으로 열람 장소에 제출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3. 토지소유자와 이해 관계인에게 개별 통지할 것이나 미수령자에 대해서는 「행정절차법」 제14조에 의거 본 공고로 갈음합니다.

2024년 5월 2일

강 남 구 청 장

가. 대 상 지: 서울특별시 강남구 개포동 산212-2

나. 계약면적: 20,849㎡

다. 계약목적: 토지소유자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공원·녹지 조성 등을 통하여 시민의 건강, 휴양 및 정서 생활을 향상 시킬 것을 목적으로 함

라. 계약내용: 부지사용계약서(안) 참조

마. 계약기간: 계약일로부터 3년 미만

바. 열람기간: 공고일로부터 14일간

사. 열람장소 및 문의처: 서울특별시 강남구청 공원녹지과(☎02-3423-6993)

붙임 도시공원 부지사용계약서(안) 1부. 끝.

도시공원 부지사용계약서(안)

토지소유자 ○○○을 “토지소유자” 라 정하고, 강남구청장을 “공원관리청” 으로 하여 다음과 같이 도시공원 부지사용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목적) 이 계약은 “토지소유자”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공원·녹지 조성 등을 통하여 시민의 건강, 휴양 및 정서 생활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의무) “토지소유자”와 “공원관리청”은 성실하게 계약 내용을 이행하여야 한다.

제3조(계약토지구역의 표시) 계약토지구역의 표시는 다음과 같으며, 그 경계 등은 붙임 도면과 같다.

토지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서울특별시 강남구	개포동 산212-2	임야	20,849㎡

제4조(계약토지의 부지사용료 지급) 도시공원 부지사용계약에 따른 부지사용료를 무상으로 한다.

제5조(계약기간) 계약 대상인 토지의 계약기간은 2024년 5월 ○○일 부터 2027년 5월 ○○일까지로 한다. (최초 계약기간은 3년 미만)

제6조(공원시설의 설치·정비) “토지소유자”와 “공원관리청”은 해당 부지에 다음 각 호와 같은 시설을 협의하여 설치·정비하는 것으로 한다.

1. 의자·음수대·안내표지판·산책로 등 시민의 이용을 위한 최소한의 시설
2. 토사 붕괴를 방지하기 위한 시설, 사방시설, 수목 보호를 위한 시설, 배수로, 무분별한 숲길(지름길)의 개설 방지를 위한 펜스·로프 등과 유사한 시설, 위험방지책(울타리) 등 공원의 녹지보전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시설
3. 녹화를 위한 수목의 식재, 녹화 공간의 설치와 개·보수 등

제7조(공원시설의 관리) “토지소유자” 및 “공원관리청”은 계약기간 중 해당 부지를 양호한 상태로 유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협의하여 관리하는 것으로 한다.

1. 해당 부지 내에 존재하는 수목의 가지치기, 풀베기, 병충해 방제 등 수목을 양호하게 가꾸기 위하여 필요한 것
2. 해당 부지 내에 설치·정비한 시설의 유지·보수에 관한 것
3. 해당 부지 내의 청소 등 청결한 환경을 유지하기 위한 것

제8조(토지사용의 제한) “토지소유자” 및 “공원관리청”은 제6조 및 제7조에 따라 협의된 시설의 설치·정비 및 관리를 위한 최소한의 토지형질변경 이외에 상호 협의 없이 해당 토지의 형질변경을 할 수 없다.

제9조(금지행위) “토지소유자”와 “공원관리청”은 계약기간 중 상호 협의 없이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할 수 없다.

1. 해당 토지에 사용 또는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권리를 설정하는 행위
2. 해당 토지에 새로운 공작물을 설치하는 행위
3. 해당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행위
4. 해당 토지의 나무를 벌채하는 행위
5. 해당 토지에 물건을 적치하는 행위

제10조(재산세 비과세 등 지원에 관한 사항) “공원관리청”은 “토지소유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지방세법」 제109조 제2항 본문에 따라 재산세를 비과세할 수 있다.
2. 제1호에 따라 재산세를 비과세하는 경우 해당 증빙자료와 사실관계 서류를 계약기간 동안 보관한다.

제11조(해당 토지의 개방) “토지소유자”와 “공원관리청”은 계약기간 중 해당 토지에 대하여 시민이 일상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여야 한다.

제12조(계약내용의 변경) 계약의 변경은 토지소유자 또는 공원관리청의 요청에 따라 계약의 당사자 간 합의에 의한다.

제13조(계약의 갱신 및 연장)

1. 계약의 갱신 여부는 만료일 전년도 5월 31일까지 통지하여야 한다.
2. 계약기간 만료일 이전에 계약의 갱신 등에 대하여 사전협의하여야 한다.
3. 제1호에 따른 통지가 없는 경우 만료일 다음날로부터 전 계약기간과 같은 기간으로 계약기간이 연장된다.

제14조(계약위반 시 조치) “토지소유자” 또는 “공원관리청” 중 어느 한 쪽이 본 계약에서 정하여진 내용에 대하여 위반했을 경우 계약상대방은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위반상태를 안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계약내용을 이행하도록 요청하여야 한다.
2. 제1호에 의한 적정한 이행요청을 2회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위반상태가 지속될 경우에는 계약위반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3. 제2호에 의한 조치에 소요된 비용은 본 계약을 위반한 자가 부담하는 것으로 한다.

제15조(계약해지 후 시설물에 관한 사항) 계약해지 후 해당 부지에 설치된 시설물에 대하여는 “토지소유자”와 “공원관리청”이 협의하여 그 시설물을 존치시키거나 철거한다.

제16조(계약내용의 해석 등에 관한 사항) 본 계약내용의 해석과 본 계약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 다시 정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토지소유자”와 “공원관리청”이 협의하

여 정하는 것으로 한다.

제17조(계약서의 보관 등) 본 계약체결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통을 작성하여 “토지 소유자”와 “공원관리청”이 각각 1부씩 보관한다.

2024년 5월 ○○일

토지소유자 주소 :
성명 : (인)

공원관리청 강남구청장 (인)

위 치 도



◆ 강남구공고 제2024-1188호

**대모산 도시자연공원구역(일원동 산63-1) 부지사용계약을 위한 주민의견청취
열람공고**

1.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의2에 의거 도시자연공원구역 일부에 대하여 토지 소유자와 부지사용계약을 체결하기 위해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서울특별시 도시공원 조례」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열람공고 합니다.
2. 관계 서류는 서울특별시 강남구청 공원녹지과에 비치하여 공고일로부터 14일간 열람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분은 열람 기간 내에 서면으로 열람 장소에 제출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3. 토지소유자와 이해 관계인에게 개별 통지할 것이나 미수령자에 대해서는 「행정절차법」 제14조에 의거 본 공고로 갈음합니다.

2024년 5월 2일

강 남 구 청 장

가. 대 상 지: 서울특별시 강남구 일원동 산63-1

나. 계약면적: 68,433㎡

다. 계약목적: 토지소유자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공원·녹지 조성 등을 통하여 시민의 건강, 휴양 및 정서 생활을 향상 시킬 것을 목적으로 함

라. 계약내용: 부지사용계약서(안) 참조

마. 계약기간: 계약일로부터 3년 미만

바. 열람기간: 공고일로부터 14일간

사. 열람장소 및 문의처: 서울특별시 강남구청 공원녹지과(☎02-3423-6993)

붙임 도시공원 부지사용계약서(안) 1부. 끝.

도시공원 부지사용계약서(안)

토지소유자 ○○○을 “토지소유자” 라 정하고, 강남구청장을 “공원관리청” 으로 하여 다음과 같이 도시공원 부지사용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목적) 이 계약은 “토지소유자” 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공원·녹지 조성 등을 통하여 시민의 건강, 휴양 및 정서 생활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의무) “토지소유자” 와 “공원관리청” 은 성실하게 계약 내용을 이행하여야 한다.

제3조(계약토지구역의 표시) 계약토지구역의 표시는 다음과 같으며, 그 경계 등은 붙임 도면과 같다.

토지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서울특별시 강남구	일원동 산63-1	임야	68,433㎡

제4조(계약토지의 부지사용료 지급) 도시공원 부지사용계약에 따른 부지사용료를 무상으로 한다.

제5조(계약기간) 계약 대상인 토지의 계약기간은 2024년 5월 ○○일 부터 2027년 5월 ○○일까지로 한다. (최초 계약기간은 3년 미만)

제6조(공원시설의 설치·정비) “토지소유자” 와 “공원관리청” 은 해당 부지에 다음 각 호와 같은 시설을 협의하여 설치·정비하는 것으로 한다.

1. 의자·음수대·안내표지판·산책로 등 시민의 이용을 위한 최소한의 시설
2. 토사 붕괴를 방지하기 위한 시설, 사방시설, 수목 보호를 위한 시설, 배수로, 무분별한 숲길(지름길)의 개설 방지를 위한 펜스·로프 등과 유사한 시설, 위험방지책(울타리) 등 공원의 녹지보전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시설
3. 녹화를 위한 수목의 식재, 녹화 공간의 설치와 개·보수 등

제7조(공원시설의 관리) “토지소유자” 및 “공원관리청” 은 계약기간 중 해당 부지를 양호한 상태로 유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협의하여 관리하는 것으로 한다.

1. 해당 부지 내에 존재하는 수목의 가지치기, 풀베기, 병충해 방제 등 수목을 양호하게 가꾸기 위하여 필요한 것
2. 해당 부지 내에 설치·정비한 시설의 유지·보수에 관한 것
3. 해당 부지 내의 청소 등 청결한 환경을 유지하기 위한 것

제8조(토지사용의 제한) “토지소유자” 및 “공원관리청”은 제6조 및 제7조에 따라 협의된 시설의 설치·정비 및 관리를 위한 최소한의 토지형질변경 이외에 상호 협의 없이 해당 토지의 형질변경을 할 수 없다.

제9조(금지행위) “토지소유자”와 “공원관리청”은 계약기간 중 상호 협의 없이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할 수 없다.

1. 해당 토지에 사용 또는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권리를 설정하는 행위
2. 해당 토지에 새로운 공작물을 설치하는 행위
3. 해당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행위
4. 해당 토지의 나무를 벌채하는 행위
5. 해당 토지에 물건을 적치하는 행위

제10조(재산세 비과세 등 지원에 관한 사항) “공원관리청”은 “토지소유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지방세법」 제109조 제2항 본문에 따라 재산세를 비과세할 수 있다.
2. 제1호에 따라 재산세를 비과세하는 경우 해당 증빙자료와 사실관계 서류를 계약기간 동안 보관한다.

제11조(해당 토지의 개방) “토지소유자”와 “공원관리청”은 계약기간 중 해당 토지에 대하여 시민이 일상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여야 한다.

제12조(계약내용의 변경) 계약의 변경은 토지소유자 또는 공원관리청의 요청에 따라 계약의 당사자 간 합의에 의한다.

제13조(계약의 갱신 및 연장)

1. 계약의 갱신 여부는 만료일 전년도 5월 31일까지 통지하여야 한다.
2. 계약기간 만료일 이전에 계약의 갱신 등에 대하여 사전협의하여야 한다.
3. 제1호에 따른 통지가 없는 경우 만료일 다음날로부터 전 계약기간과 같은 기간으로 계약기간이 연장된다.

제14조(계약위반 시 조치) “토지소유자” 또는 “공원관리청” 중 어느 한 쪽이 본 계약에서 정하여진 내용에 대하여 위반했을 경우 계약상대방은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위반상태를 안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계약내용을 이행하도록 요청하여야 한다.
2. 제1호에 의한 적정한 이행요청을 2회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위반상태가 지속될 경우에는 계약위반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3. 제2호에 의한 조치에 소요된 비용은 본 계약을 위반한 자가 부담하는 것으로 한다.

제15조(계약해지 후 시설물에 관한 사항) 계약해지 후 해당 부지에 설치된 시설물에 대하여는 “토지소유자”와 “공원관리청”이 협의하여 그 시설물을 존치시키거나 철거한다.

제16조(계약내용의 해석 등에 관한 사항) 본 계약내용의 해석과 본 계약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 다시 정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토지소유자”와 “공원관리청”이 협의하

여 정하는 것으로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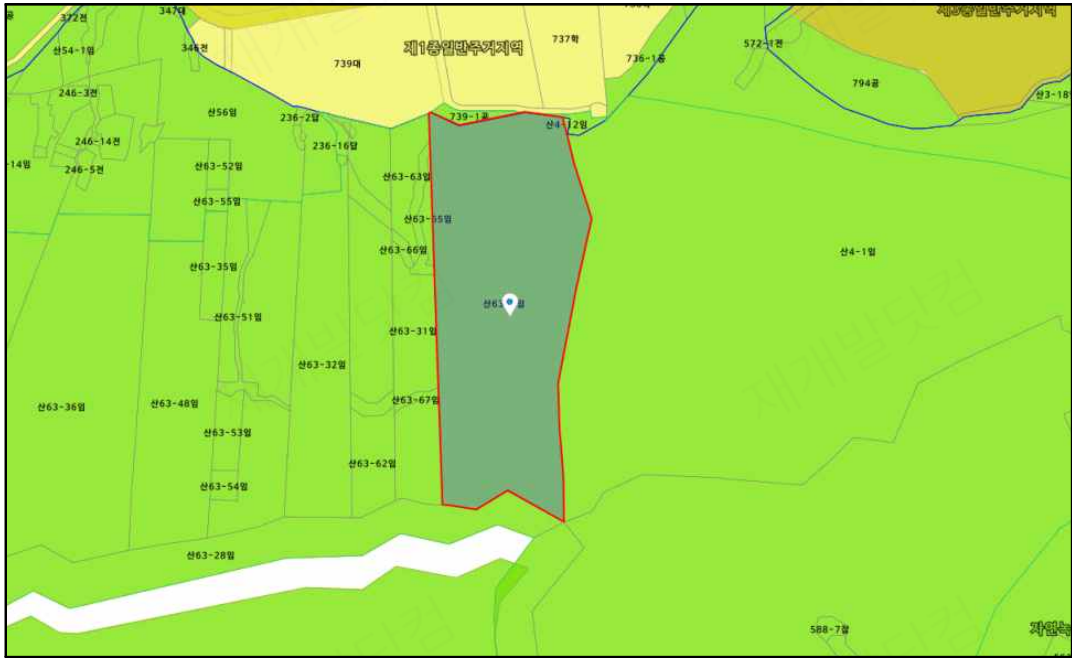
제17조(계약서의 보관 등) 본 계약체결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통을 작성하여 “토지 소유자”와 “공원관리청”이 각각 1부씩 보관한다.

2024년 5월 ○○일

토지소유자 주소 :
성명 : (인)

공원관리청 강남구청장 (인)

위 치 도



사업소고시

◆ 미래한강본부고시 제2024-130호

하천점용허가 고시

하천법 제3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하천점용허가를 하였기에 같은법 시행령 제38조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024년 5월 2일
서울특별시 미래한강본부장

허가 받은자	점용허가(사용) 개요				허 가 연월일
성 명	점용위치	점용면적	점용목적	점용기간	
리버시티수상스키장 (대표:김백호)	서울특별시 강남구 압구정로 11길 37-53 (잠원한강공원)	동력선 8척 - 미도호, 리텐호, 리버시티1호, 2호, 3호, 6호, 8호, 9호 *무동력선 8대 - 벤드웨곤, 바바바코트, 수상스 키, 웨이크보드, 팽팡, 카약, 패 들, 포일보드	수상레저사업	2024.4.25.~ 2024.10.15.	2024. 4.24.

◆ 미래한강본부고시 제2024-133호

하천점용허가 고시

하천법 제33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하천점용허가 하고, 하천법 제33조 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024년 5월 2일
서울특별시한강사업본부장

허가 받은자		점용허가(사용) 개요				허가 연월일
성 명	주 소	허가구역	점용면적	점용목적	점용기간	
한수개발	서울시 마포구 양화로 156 LG펠리스 *****호	서울시계내 한강 (마포구 상암동 496-119번지상 한강)	(선박39척) 9,827㎡	공사 투입을 위한 선박 정박대기장소	' 24. 5. 1. ~ ' 24. 5. 31.	' 24. 4. 26.

◆ 미래한강본부고시 제2024-135호

하천점용허가 고시

하천법 제33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하천점용허가 하고, 하천법 제33조 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024년 5월 2일
서울특별시 미래한강본부장

허가 받은자		점용허가(사용) 개요				허가일
성명	주소	허가 구역	점용면적	점용목적	점용기간	
서울 윈드서핑 연맹	서울시 광진구 강변북로 2326 (자양동)	잠실대교~ 영동대교	구조선 3 윈드서핑 20 윙포일 8 카이트보딩 1 전동포일 6 펌핑포일 1 카약 20 패들보드 25	수상레저사업	2024.5.1.~ 2024.10.31.	2024. 4.24.

◆ 미래한강본부고시 제2024-219호

하천점용허가 고시

하천법 제33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하천점용허가 하고, 하천법 제33조 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024년 5월 2일
서울특별시미래한강본부장

허가 받은자		점용허가(사용) 개요				허 가 연월일
성 명	주 소	점용장소	점용면적(㎡)	점용목적	점용기간	
서울특별시 미래한강본부 (수상여과과)	서울특별시 성동구 강변북로257	서울특별시 마포구 상암동487-479 일대	부유식 공작물:1,144.6	서울수상 레포츠펀터 및 관련시설 (유선사업, 수상레저사업, 마리나선박보관 계류업)	' 24.3.16. ~ ' 29.3.15. (5년)	' 24. 4.16.
			수상계류장:935.4			
			육상계류장:4,957			
			연락교:17.7			
			부유식 방파제:371.7			
			경사로:476			
			간접점용(수면):7,696.4			

기 타

◆ 동대문소방서공고 제2024-21 호

소방시설관리업 등록 공고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9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소방시설관리업을 등록 하고, 같은법 시행규칙 제31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공고합니다.

2024년 5월 2일
동 대 문 소 방 서 장

○ 등록대상

업 종	상 호 (사업자등록번호)	등록번호 (등록년월일)	대표자 (생년월일)	영업 소재지	전화번호
전문 소방시설관리업	금성방재기술(주) (801-88-00279)	제 서울(동대문)- 2024-0003호 (2024-04-24)	황선우 (1956. 01. 05.)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난계로30길65, 202호 (신설동, 세원빌딩)	02-2231-0119

※ 기타 문의사항은 동대문소방서 예방과 위험물안전팀 ☎02-6942-1292로 연락 바랍니다.

◆ 은평소방서공고 제2024-1호

소방시설관리업 등록 공고

「소방시설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9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소방시설관리업을 등록하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31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공고합니다.

2024년 5월 2일
은 평 소 방 서 장

○ 등록대상

업 종	상 호	등록번호 (등록일자)	대표자	소재지	전화번호
일반 소방시설 관리업	주식회사 현명이앤에프	제 서울(은평)-2024-0001 호 (2024.4.24.)	김재현	서울특별시 은평구 진관3로 32 B동 911호	02) 6958-7119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은평소방서 예방과 관리업담당(☎02-6981-6092)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한강유역환경청고시 제2024-153호

하천점용(일시)허가 고시

하천법 제3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허가 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24년 5월 2일
한강유역환경청장

1. 하천의 명칭: 한강
2. 점용자의 성명 및 주소
 - 성 명 : 신왕건설(주)
 - 주 소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천호대로 241, 102동 1712호
3. 점용 위치 및 면적
 - 위 치 : 서울특별시 용산구 서빙고동 291-2번지(한강시민고원 이촌지구)
 - 면 적 : 60㎡
4. 점용의 목적 및 개요
 - 목 적 : 지역난방 열수송관 하자보수 공수
5. 점용기간 : 2024.04.23. ~ 2024.05.02.

◆ 한강유역환경청고시 제2024-156호

하천점용허가 고시

하천법 제3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허가 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24년 5월 2일
한강유역환경청장

1. 하천의 명칭: 한강
2. 점용자의 성명 및 주소
 - 성 명 : 서울특별시장
 - 주 소 :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3. 점용 위치 및 면적
 - 위 치 :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촌로72길 62
 - 면 적 : 232.26㎡
4. 점용의 목적 및 개요
 - 목 적 : 수변 휴식공간 조성
 - 내 역 : 앉음벽 벤치, 원형벤치, 캐노피, 테이블, 입구가벽 등
5. 점용기간 : 2024.04.25. ~ 2029.04.24.
6. 공사기간 : 2024.04.25~ 2024.06.15.

◆ 한강유역환경청고시 제2024-159호

하천점용허가 고시

하천법 제3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허가 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24년 5월 2일
한강유역환경청장

1. 하천의 명칭: 중랑천
2. 점용자의 성명 및 주소
 - 성 명 : 노원구청(치수과)
 - 주 소 : 서울특별시 노원구 노해로 437
3. 점용 위치 및 면적
 - 위 치 : 서울특별시 노원구 하계동 354-4일원
 - 면 적 : 영구 1,153㎡ 일시 847㎡
4. 점용의 목적 및 개요
 - 목 적 : 중랑천 만남의 광장 휴게쉼터 조성
 - 내 역 : 하늘카페, 경사로 및 계단, 하늘쉼터, 하늘초화원, 물멍쉼터, 휴게광장
5. 점용기간 : 영구 2024.04.26. ~ 2029.04.25.
일시 2024.04.26. ~ 2024.12.31.
6. 공사기간 : 2024.04.26. ~ 2024.12.31. ※우기철(5.15 ~ 10.15) 공사금지



기관의 장	
선	
람	

공 람									